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Chungbuk Business Agency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은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1차

유·무형 자원

잘 키운

우리 농산물로

2차

제조·가공

농부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3차

체험·관광

농촌과 제품을
체험하고 즐기는

가치가 곱해져  6차산업이 완성됩니다



차 산업은 왜 필요한가?

농업인은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 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우리 농부가 직접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농촌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으며 농촌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합니다.



추진방향

비전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농산물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목표

농촌융복합 경영체 단계별 육성·지원

- 인증사업자 지정 및 관리 체계화
- 맞춤형 전문상담 및 현장 코칭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발굴 및 홍보

정책수립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기획 역량 강화 지원
- 관련 정책 모니터링
- 지역 유관기관간 정책 연계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 인프라 정비

- 농촌융복합산업 실태구축 및 활용 연계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모니터링

추진과제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판로 협업 시스템 구축
- 지역 유통 플랫폼 활성화
- 규제 발굴 및 정책 개선

신경제 패러다임 대응을 위한 홍보·마케팅 다양화

- 정책·브랜드 홍보
- 중앙단위 제품판로 확대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소비 저변 확충을 위한 외연 확장

- 제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통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인증제 운영 기본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육성 · 관리를 통한 저변 확대와 내실화 추구
-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본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증 · 갱신 기준 확립
- 산업형태 · 매출액 규모에 따른 교육 · 판로지원 등 사후관리 연계

사업목적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인증사업자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6. 3.) 및 시행('15. 6. 4.)

사업기간

모집공고일 ~ 2025년 9월까지

(현황) '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525개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합계
230	247	177	257	400	415	287	261	171	39	41	2,515

* 인증사업자 수 (누적) : ('15년) 802개소 → ('17) 1,397 → ('19) 1,624 → ('21) 2,034 → ('23) 2,396 → ('24) 2,525

(충북)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178개소 [1월기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계
49	25	21	16	9	25	2	10	14	13	2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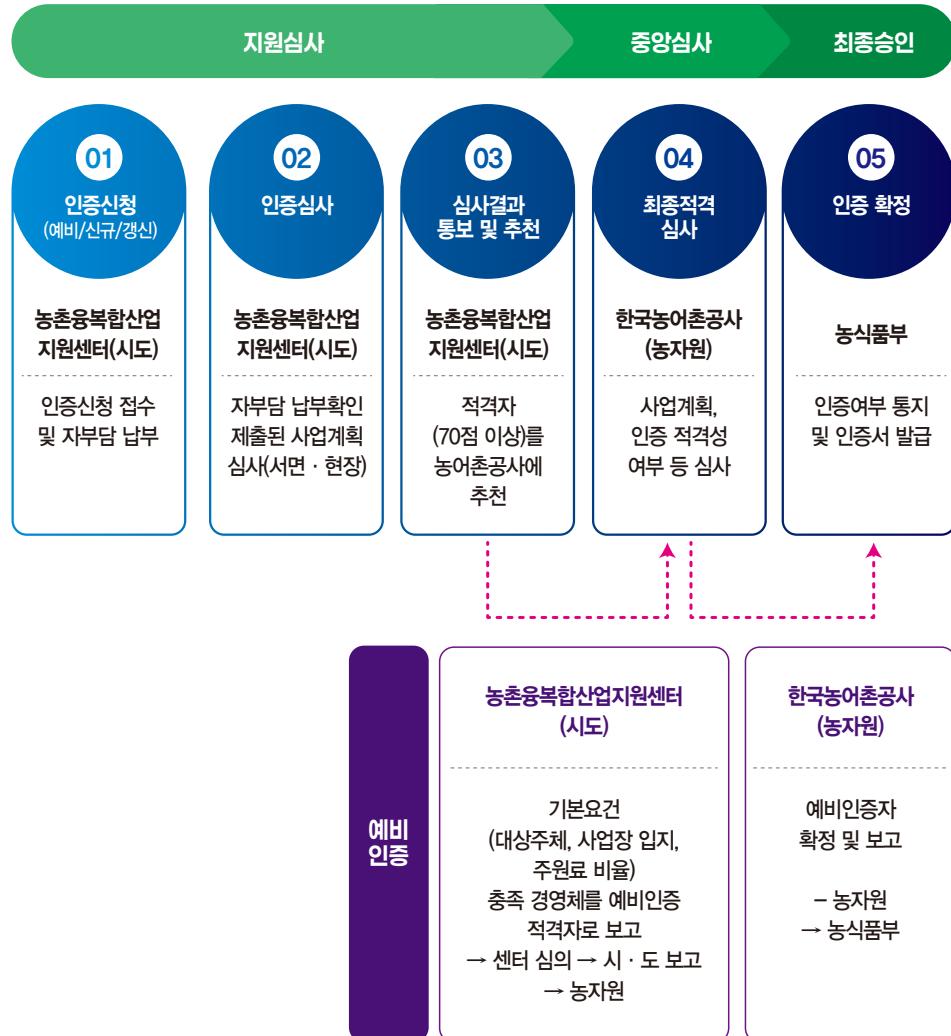
* 인증사업자 수 (누적) : ('15년) 69개소 → ('17) 118 → ('18) 124 → ('19) 116 → ('20) 129 → ('21) 134 → ('22) 140 → ('23) 178 → ('24) 186

(충북)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 8개소 [1월기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계
2	1	0	0	1	0	1	0	1	0	2	8

* 인증사업자 수 (누적) : ('22) 4 → ('23) 11 → ('24) 19

추진절차



※ 자부담 :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소재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기준 유형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 (1차 X 2차), (1차 X 3차), (1차 X 2차 X 3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 ·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 · 도와 접해있는 시 · 군의 경우 인접 시 · 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단, 주원료의 품목 특성 상 지배지역이 한정된 경우 시 · 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빙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시, 지역산 의무 사용비율(50%) 적용 예외 가능 * 농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공품 내 지역산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증빙 시, 인정 가능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생산품 품목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주 생산품 변경 시 사업자 인증 변경 신청 필요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6백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 근거 : ('19) 41,182, ('20) 45,029, ('21) 47,759, ('22) 46,153, ('23) 50,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 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예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인증제도 구분 기준〉

구분	예비인증(2년)	본인증(3년/갱신)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 추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중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주체 ② 사업장 입지 ③ 주재료 비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갱신기준 충족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인증일로부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심사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각 시 · 도 지원센터 ■ (예비인증)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1차 – 각 시 · 도 지원센터 2차 – 한국농어촌공사 ■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판매플랫폼, 박람회 · 품평회 참가 1회 이상 참가 지원 ■ 교육 우선 신청 자격, 본인증 심사 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판로,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신설유형 : 농산물 외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2 · 3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 중 사업자 입지 및 사업성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25년 예비인증 형태로 시범운영)

컨설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운영 기본방향

-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코칭 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제공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 예비인증사업자, 인증사업자의 역량 도모를 위해 전문가 매칭 지원
- 예비인증사업자, 인증 사업자의 분야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매칭으로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역량 강화

사업기간

모집공고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 (예비)인증사업자 및 인증취득희망자

※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제외

※ 인증취득희망자의 경우 1유형만 신청 가능

‘25년 컨설팅 전문위원 현황

구분	합계	경영							기술					기타
		경영 전략	마케팅/ 디자인/ 홍보	재무/ 생산성 향상	지적 재산권/ 법률	농촌 관광	수출	민간 투자	제품개발/ 기공기술	공장 신증축	품질위생 관리/공정 개선	ICT	음식 개발	
계	346	71	88	24	10	35	15	1	31	8	32	11	15	5
신규위원	55	14	15	7	1	3	1	1	4	1	5		2	1
재임위원	291	57	73	17	9	32	14		27	7	27	11	13	4

‘25년 컨설팅 전문위원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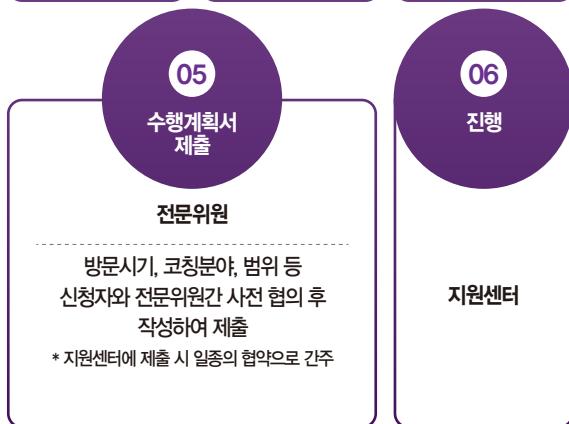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계	346	44	41	21	32	55	57	17	39	31	4	5
신규위원	55	5	6	4	6	9	6	6	7	4	1	1
재임위원	291	39	35	17	26	46	51	11	32	27	3	4

추진절차

I. 신청 및 매칭



II. 진행



III. 마무리



컨설팅 지원분야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자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HACCP 등 위생관리,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공정개선, ICT(쇼핑몰 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그 외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세부내용

분야	주요내용	지원범위	기간 및 비용	
			지원금	자부담
유형① (일반코칭)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통한 회차별 애로사항 해소	최소 2회, 최대 4회	30만원	10만원
유형② (제품 컨설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을 전제로 제품 디자인 등 컨설팅 ※ 기존 입점 제품 제외	최대 2회	180만원	60만원
유형③ (보육 매니저)	경영진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며, 상시(월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최대 12개월	60만원	20만원

■ (지원제외)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제외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활성화

목적

- 농촌융복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대형 판매 플랫폼 입점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주제

(안테나숍) 소비자 반응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으로 마케팅 거점 활용

(판매 플랫폼) 온·오프라인 플랫폼 프로모션, 판촉행사를 활용한 기획 판촉전

◀ 충북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현황 ▶



(주)농협유통 청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산남동 하나로마트



온충북



청풍명월장터



충북도청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제품선정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인증사업자 생산제품으로 대상 전문가 (유통업체 MD, 컨설턴트, 농협 관계자 등) 구성하여 지역입점품평화를 거쳐 안테나숍·판매플랫폼 참여업체 및 제품 선정
- 지원센터는 입점업체 운영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제품 진입, 부실제품 퇴출 등 선의의 경쟁 유도

판촉전 진행

- 행사개최 및 수도권 등 대형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지원

인증사업자 지원혜택

자금(융자)신청 자격 부여

- 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지원
- 이자율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규모(최대) : 3억 (운영) ~ 30억 (시설)
 - 운영 : 3년 / 2년거치 3년상환
 - 시설 : 30억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토지매입 불가

- 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원절차 : 신청(농업인 → 지자체) → 심사(지자체, 농협은행) → 대출(농협은행 → 농업인)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기공시설, 유통기반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체험시설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규모 : 총사업비 최대 7억원/개소
※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도비 60%, 시 · 군비 10%, 자부담 30%

충북도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

- 농촌융복합사업 시설 확충 및 경영 판로개선 사업비 지원
 - 시설비 : 제조기공시설 설치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 운영비 : 신제품(포장재, 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지원규모 : 2억원/개소

- 지원기준 : 도비 15%, 시 ·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요건
 - 신청마감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 한 경우 신청 가능)

인증사업자 표시

- 인증사업자 사업장 및 제품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표시 가능



창업활성화 국비지원

①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 지원대상 : 최근 2년간 민간투자를 유치(투자계약 포함) 원료한 농촌 융복합인증사업자 중 세부요건을 만족하는 자
- 지원내용 :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이력이 있는 유망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5억원(국비 70%, 자부담 30%)

②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인 (예비)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자금, 교육지원 등 농촌융복합사업 분야내 액셀러레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억8천만원(국비 100%)

우수사업자 표창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특례

□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을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 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균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균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농업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1개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목표

농촌융복합산업화 단계별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방향

01

성장 가능한
경영체 발굴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통한
시후관리

02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0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분야별 맞춤형 현장코칭을
통한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

“

충북 농업·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위해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



충청북도의 행복한 농업과 농촌이 설계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이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1차), 가공(2차), 체험·관광(3차)를 융·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농업과 농촌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시·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생산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충청북도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끈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www.충북6차산업.com



센터 사업안내

043)270-0231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043)270-0232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043)270-0233

유통판매플랫폼 및 홍보

043)270-0234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Chungbuk Business Agency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